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90600 · 17-진정-0890700 · 17진정0922900(병합) ○○프
로봇링협회의 나이차별

진 정 인 1. ○○○
2. △△△
3. □□□

피진정인 ○○○○ ○○○○○○○○○ 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 ○○○○○○○○○에서 주관하는 프로선발전의 응
시 요건에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이하 ‘피진정 협회’ 라 한다)는 협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선발전의 참가자격을 남성 만45세 이하, 여성 만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한

우리나라에서 상금을 걸고 프로볼링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피진정 협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등 프로볼링 선수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진정 협회는 정회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남성 만45세 이하, 여성 만40세 이하로 제한해 회원이 될 기회가 박탈되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 협회는 소정의 프로볼링선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스포츠 단체이다. 피진정 협회는 회원을 상시 근로자처럼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준 통과자에 한해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기량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할 고유권한은 피진정 협회에 있다.

피진정 협회 회원을 선발하는 목적은 프로볼링의 발전과 볼링의 저변 확대로, 협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은 대회참가와 회비납부에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고령자일수록 프로선수자격증 취득 후 대회참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추구 수단으로만 프로선수자격증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또한 장시간 운동에 따른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프로볼링의 특성상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가 있으면 프로볼링선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 등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체력 저하로 같이 경기하는 다른 선수의 경기 집중에 방해가 되는 등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2017. 1. 13. 협회 이사회에서 프로선발전 참가 나이를 남성 45세 이하, 여성 40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요지와 피진정 협회가 제출한 협회정관 및 프로볼링대회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협회는 프로볼링대회의 개최, 프로볼링선수의 선발과 육성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진정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협회가 주최하는 상금대회에는 정회원 및 협회가 별도로 인정한 준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정회원은 피진정 협회가 실시하는 실기 및 필기시험과 면접에 합격하여 소정의 연수교육 및 볼링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남성 367명, 여성 77명)이고, 준회원은 외국의 프로볼링협회가 인정한 프로볼링선수이다.

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협찬금, 기부금, 회원의 회비와 입회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하며 협회가 협찬을 받아서 2017년에 주최한 상금대회는 아래와 같다.

대 회 명	상 금
◇◇◇◇◇ ◇◇◇◇◇ ◇◇◇ 볼링대회	100,000,000
◇◇ ◇◇◇◇◇ ◇◇◇ 프로볼링 ◇◇투어	60,000,000
◇◇ ◇◇◇◇◇ ◇◇◇ 프로볼링대회	52,000,000
◇◇◇◇ ◇◇◇ 남여 ◇◇◇ 프로볼링대회	50,000,000
◇◇ ◇◇◇◇◇◇◇ ◇◇◇ 프로볼링대회	55,000,000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 협회가 주관하는 프로선발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하는 구분·배제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 심사에 있어서 차별 사유 해당성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차별 영역과 관련해서도 사적 클럽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모임 또는 협회의 가입에 관한 사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측면이 커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진정 협회는 프로볼링선수의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영향력 있는 단체이고, 피진정 협회의 회원 자격 자체를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회원 자격 유무가 구성원들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여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용 영역에 준하는 기타 차별 영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진정 협회가 주관하는 볼링대회는 피진정 협회에서 프로볼링선수의 자격을 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협찬 등을 통하여 상당액의 상금이 걸려 있는바, 피진정 협회의 가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획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심사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한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진정 협회의 나이에 근거한 배제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고 그 목적에 비추어 적

정한 경우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 협회는 프로선발전 응시요건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프로볼링 시합이 체력부담이 크고,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경기력이 저하 되면 중도 포기 등 경기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의료·보건 인프라의 선진화로 인해 평균수명이 상승되고 있고, 통상 나이와 체력은 일률적인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프로볼링선수의 나이와 경기력은 상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과학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정사실 마항에서 확인되는 사례만으로는 나이와 경기력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체력 저하로 같이 경기하는 다른 선수의 경기 집중에 방해’ 라는 피진정 협회의 주장 역시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또한 프로볼링이 피진정 협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체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스포츠 종목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프로볼링선수의 활동이 나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피진정 협회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진정 협회가 주관한 프로선발전을 통해 합격한 정회원이 남자 45세, 여자 40세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선수활동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 피진정 협회가 주관하는 프로볼링대회에서는 별도의 나이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 협회의 주장은 논리상으로도 모순되어 설득력이 없다.

한편 고령자일수록 프로볼링선수 자격증 취득 후 개인의 영리만 추구하

고 협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으므로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피진정 협회의 주장 역시, 소수 불성실 당사자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는 특정 연령대를 기준으로 도덕적·공동체적 가치의 준수가 불성실해진다는 주장이어서,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불성실 회원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은 협회 회칙을 근거로 해당 선수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 및 프로볼링선수 자격 반납 등의 행정적 조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특정 연령대 이상의 집단 모두를 부정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배제시켜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 협회가 경기력 저하 및 경기 진행 차질, 개인 소양 등의 이유로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선발전 응시 요건을 나이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로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5.

위원장 최혜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